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朴芝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22
----------	-------

발의연월일 : 2026. 8. 18.

발 의 자 : 朴芝源 · 윤준병 · 박희승
염태영 · 이수진 · 박용갑
서영석 · 권칠승 · 문진석
허종식 · 소병훈 · 서미화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8조 및 제89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 또는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청구한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 명칭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심판청구의 심의·의결기관이 아닌 당사자 간 분쟁을 조정하여 화해 또는 합의하는 기관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명칭을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88조 및 제89조 등).

또한, 2014년에 개정된 제89조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심판청구 접수 건수가 2013년 2만건에서 2025년 6만건으로 3배 증가하

는 등 심판청구 규모의 확대에 따라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는 위원의 증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90명 이내로 증원함으로써 보다 신속·공정한 심판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89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심판위원회”로, “60명”을 “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심판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90명”에 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8

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제8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건강보험심판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8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u>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u>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9조(심판청구) ① ----- ----- ----- <u>건강보험심판위원회</u> ----- ----- -----.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u>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u>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u>건강보험심판위원회</u> ----- -----.
제89조(<u>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u>)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u>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u> (이하 “ <u>분쟁조정위원회</u> ”라 한다)를 둔다.	제89조(<u>건강보험심판위원회</u>) ① ----- ----- ----- <u>건강보험심판위원회</u> (----- <u>심판위원회</u> ---)- -----.
② <u>분쟁조정위원회</u> 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u>60명</u> 이내의 위원으로	② <u>심판위원회</u> ----- ----- <u>90명</u> -----

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
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
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
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
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

③ 심판위원회-----

-----.

④ 심판위원회-----

-----.

⑤ 심판위원회-----
-----심판
위원회-----.

⑥ -----
-----심판위원회

-----.

⑦ 심판위원회-----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	-----
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	-----
다.	-----.